부산직할시사하구복지장학금지급조례안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복지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)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의 명칭은 "부산직할시 사하구 복지장학금"이라 칭한다.

제 3 조(장학금의 지급대상)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.

1.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2. 영세 농어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3.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

제 4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) ①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② 특별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한다.

③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한다.

제 5 조(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)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정한다.

제 6 조(장학생의 선발)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.

1. 동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.
2.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.

제 7 조(지급정지)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
1.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
2. 퇴학, 정학,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

3. 타 시(도)로 전학하였을 때

4.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

5.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

6. 거주지를 사하구 관내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

② 장학금 지급 정지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.

제 8 조(장학금 조성 및 관리) ① 장학기금의 조성은 3억원을 목표로 1995년도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한다.

②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.

제 9 조(장학금의 재원)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